

의안번호	제 24 호
의결년월일	1998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8. 8. 21.

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'98. 8. 2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·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유사·중복기구인 보건소와 보건출장소를 통폐합하여 업무를 기능에 맞게 단일화 하고자함.

2. 법적근거

-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[도 행정 12200-10406('98. 6. 22)]

3. 주요골자

- 가. 보건출장소를 폐지하고 보건소 하부조직으로 관리과 및 보건진료센터를 신설
- 나. 본청 위생과 업무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사천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(안)

사천시보건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천시보건소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) 보건소, 보건진료센터 및 보건지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소장 및 지소장)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.

②보건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.

③소장은 시장의,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4조(하부조직)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관리과와 보건진료센터(이하“진료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공무원)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원은 사천시장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업무) ①보건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
2. 식품위생 행정의 종합 기획
3. 공중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 지도·관리

② 보건지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
2.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3.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
4. 결핵, 나병, 성병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
5.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
6. 국민 건강증진, 보건교육,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
7. 노인보건사업
8.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
9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의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

제7조(수수료등) ①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도의 조례로서 정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보건소, 보건진료센터 및 지소의 명칭·위치·관할구역

명 칭	주 소	관할구역	비 고
사천시 보건소	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	사천시, 읍·축동면 일원	
보건진료센터	사천시 동금동 337-2	동 일 원	
정동면 보건지소	정동면 대곡리 299번지	정동면 일원	
사남면 보건지소	사남면 화전리 1316-3번지	사남면 일원	
용현면 보건지소	용현면 송지리 288-1번지	용현면 일원	
곤양면 보건지소	곤양면 성내리 194-1번지	곤양면 일원	
곤명면 보건지소	곤명면 정곡리 860-8번지	곤명면 일원	
서포면 보건지소	서포면 구평리 655번지	서포면 일원	